

## 2026년도 작은 사업장을 위한

## 「제조업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」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신청<br>사업장<br>(필수<br>작성) | 사업장<br>정보 | 사업장명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관리번호<br>(개시번호)<br>사업자등록번호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팩스번호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재지       | 상시근로자수<br>*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수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      |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|
| 업무담당자                   | 성명        | 휴대전화번호<br>이메일주소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(컨설팅 대상 업종) 제조업, 운수창고통신업, 광업, 임업, 기타의사업(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,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한함)

- \* (컨설팅 지원 제외) ① '26년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(위탁) 사업장(단, 기술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), ② KOSHA-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사업장, ③ 공정안전보고서(PSM) 대상 사업장, ④ '22년~'25년에 공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(공단 또는 위탁)을 지원받은 사업장, ⑤ '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 매칭지원 사업장(체계구축 컨설팅 과제 수행에 한함), ⑥ '26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장, ⑦ 동일사업장(대표자, 회사명, 주소가 모두 동일)  
※ 컨설팅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

2026년도 고용노동부-안전보건공단에서 추진하는 「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」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컨설팅 시 대표이사 또는 경영책임자와 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을 적극 추진할 것을 확언합니다.

[illegible]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위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\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☒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(개인정보 수집·이용)에 의한 안전보건공단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안내

1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: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연락, 민간기관 컨설팅 시 배정된 민간기관(제3자)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연락, 사업 모니터링, 고객만족도조사, 지원효과 제고를 위한 연구, 자료 송부
2. 수집·이용 개인정보: 성명, 휴대폰번호, e-mail      3. 보유·이용기간: 컨설팅 년도 포함 3년간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신청이 불가함

☒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하십니까? ☐ 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

### 처리절차

